

2024년도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모집 공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학습기업의 지정)에 따라, 2024년도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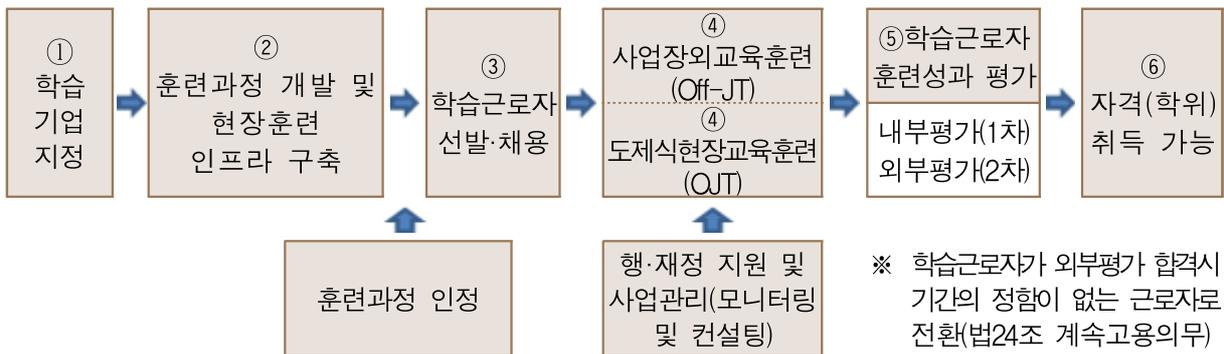
고용노동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개념)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 일터에서 장기간(1~2년)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가 평가 후 자격 부여



나. (학습기업 준수사항)

- 기업이 주도하여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여야 함
- 일과 학습을 병행하되,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 훈련 대상자는 신규채용자 등 훈련개시 일자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취득일이 1년 이내인 자로 선발하여야 하며, 근로자로 채용된 상태에서 훈련을 받아야 함

※ 15세 미만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근로자,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별첨4 참조),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고용할 수 없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훈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평가) 훈련 중 또는 종료 후에 실시하고, 산업형과정의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자격·학위*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기업은 그에 합당한 인사·처우 등 대우를 하여야 함

* 훈련결과를 학위와 연계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연계형 공동훈련센터(계약학과) 등과 연계하여 훈련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다. (훈련직무)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장시간 숙련형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무

※ 단기 교육훈련으로도 독립적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 반복 직무는 제외

- 훈련과정은 기업이 체계적으로 도제식 현장교육훈련(OJT) 및 사업장외교육훈련(Off-JT)을 실시할 수 있도록 NCS* 기반 설계

* NCS 24개 대분류 현황(NCS 홈페이지(www.ncs.go.kr) 참조)

 01. 사업관리	 02. 경영 회계 사무	 03. 금융 보험	 04. 교육·기연·사회 과학	 05. 법률·경찰·수방 고도·직업	 06. 보건 의료	 07. 사회복지공공	 08. 문화·여유·디자인 관광
 09. 운송·운송	 10. 영업판매	 11. 광·방송	 12. 이용·숙박·여행 오락 스포츠	 13. 음식서비스	 14. 건설	 15. 기계	 16. 재목
 17. 화학	 18. 섬유·피복	 19. 전기·전자	 20. 정보통신	 21. 식품가공	 22. 인쇄·복제·가구 금속	 23. 환경·에너지·자연 환경	 24. 농림어업

※ 고용노동부 고시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참조

라. (참여유형) 재직자, 재학생 단계로 구분

구분	주요 특징	관리주체	사업장외교육훈련	현장훈련
① 재직자 단계	훈련시작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입직자 대상으로 훈련 실시 * 단 P-tech 유형은 별도 기준에 따름	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	기업 또는 외부 교육훈련기관	기업
②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 있는 특성화고 재학생(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또는 전문대 재학생(전문대 재학생단계), 4년제 대학 졸업반 학생(PP형) 대상으로 실시	기업, 공동훈련센터	공동훈련센터	기업

○ (재직자 단계) 사업장 외 교육훈련 수행 주체에 따라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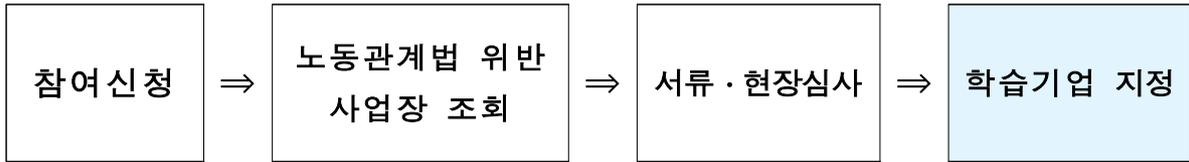
구분	주요 특징	관리주체	사업장 외 교육훈련	현장훈련
① 단독기업형	기업이 해당 기업에서 활용할 인재를 직접 양성	기업	기업 또는 외부 교육훈련기관 (위탁계약 별도 체결)	기업
② 공동훈련 센터형	공단이 승인한 외부 전문훈련기관(공동훈련센터)에서 사업장 외 훈련(Off-JT)을 제공하고, 기업에서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OJT) 실시	기업, 공동훈련 센터	공동훈련센터	기업
③ P-TECH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폴리텍·전문대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중·고급 수준의 기술 훈련과정	기업, 공동훈련 센터	공동훈련센터	기업
④ 경력개발 고도화	P-TECH 이후 전문대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 등과 연계하여 상위자격 (L5 이상)으로 성장경로 제공	기업, 공동훈련 센터	공동훈련센터	기업

○ (재학생 단계) 학습근로자 학위 등에 따라 구분되며, 모두 공동훈련센터형으로만 참여 가능

구분	주요 특징	관리주체	사업장외교육훈련	현장훈련
① <고교 단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특성화고 2~3학년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직업교육+도제훈련 통한 현장성 제고	기업, 공동훈련 센터	공동훈련센터 (특성화고)	기업
② <전문대 단계: 전문대 재학생 단계> 전문대 최종학년	전문대 재학생(졸업반)을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병행	기업, 공동훈련 센터	공동훈련센터 (전문대)	기업
③ <대학교 단계: 4년제 일학습병행> 4년제 대학 최종학년	기업의 근로자로 채용되어 훈련을 받거나, 전공분야 기업의 실습을 지원하는 훈련모델	기업, 공동훈련 센터	공동훈련센터 (4년제 대학)	기업
④ <신기술·첨단 산업 분야: 첨단산업 아카데미>	전문대, 4년제 최종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첨단산업 직종 분야의 훈련모델	기업, 공동훈련 센터	공동훈련센터 (4년제 대학)	기업

2. 신청·접수 관련 사항

< 학습기업 지정절차 >



가. 모집시기 : 연중 상시

나. 신청 방법

- (단독기업형) HRD-Net(직업훈련포털) 외부행정시스템 접속
 - [일학습병행] > [참여신청서(단독)] 항목을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 선택한 기업 소재지의 관할 공단 지부·지사(별첨1)로 자동 접수
- (공동훈련센터형 및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에 참여 중인 공동훈련센터와 협약 체결 후, 협약 기관의 지원 하에 학습기업에서 HRD-Net에 신청서 작성

* 공동훈련센터 목록은 (별첨2) 참조

신청방법	○ HRD-Net(직업훈련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단독기업형은 “훈련기관회원”으로,	
	- 공동훈련센터형은 “기업회원”으로 사이트 가입 후 신청	
	단독기업형 신청서	① 훈련기관회원으로 가입·로그인 → ② 행정지원 이용신청 및 승인 후 → ③ ‘행정지원시스템’ 설치 → ④ 일학습병행 > [참여신청]에 정보입력
	공동훈련센터형 신청서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 ② 일학습병행 참여신청 → ③ 협약기업신청서 탭에서 정보 입력

다. 기본요건

○ 기업지정요건 [법 제13조제2항, 영 제8조]

순번	지정요건
1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이 아닐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된 내용과 관련된 사업장(공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으로 한정한다)이 아닐 것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인정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아닐 것
4	「고용보험법」 제9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일 것
5	학습기업 지정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단독기업형은 50인, 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일 것. 단, 공동훈련센터형에 한해 기술력이 높은 기업 등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기업**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일 것 ※ 향후, 관련규정 개정 등으로 변경사항 발생 시 재안내 예정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 중 최하위 두 번째 등급 이상일 것 (단, 기업신용등급이 생성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함께 실시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8	일학습병행 과정과 관련된 기업현장교사·실무 담당자를 각 1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 상시근로자 수 기준(택일) [규정 별표1]

-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HRD-Net 전산의 사업장 기준과 동일)
- ② 학습기업 지정신청일을 포함하여 3개월간 계속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수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동훈련센터형에 한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업 참여 가능

순번	요건
1	청년친화 강소기업, 강소기업, Best HRD기업, 공공기관, 명장기업, 기능한국인기업, 우수숙련기술자기업, 숙련기술전수자 기업, 숙련기술모범사업체, 월드클래스, 우수기업연구소(ATC, ATC+), 글로벌 강소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 ※ 단, 각종 정부 인증 사항의 경우 학습기업 참여신청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
2*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 특화업종(특구)지원센터 추천기업 ※ 단, 해당 지역에 위 추천서 발급기관이 없는 경우는 관할지역의 공단 지부·지사가 지정한 외부전문가가 추천한 기업

※ (참고) 지정취소 등의 요건 [법 제14조, 시행규칙 별표1, 규정 제5조]

- 학습기업이 기업지정요건을 갖추고 일정절차를 거쳐 지정된 후에도 아래 지정 취소 등의 요건에 의해 지정취소될 수 있음

순번	요건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기업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학습기업이 지정요건에 미달된 경우
3	학습기업 지정 이후 임금체불 발생한 사업장. 단,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에 한함
4	학습기업 지정 이후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단, 산업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사업장에 한함

- 학습기업의 지정요건 1~2호 및 지정취소 등의 요건 3~4호 여부를 조회하여 해당 사실 적발 시 지정 불가 또는 학습기업의 지정취소 조치

- 학습기업 사업주 준수사항 [법 제25조, 미준수시 과태료 대상]

조항	요건
1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일학습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근로자가 학습근로계약기간 동안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에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 하고, 학습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지체없이 학습근로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 하여야 한다.
2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의 교육훈련을 담당할 능력과 소양을 갖춘 기업현장교사를 지정 하고, 기업현장교사가 교육훈련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학습근로자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교사의 근무조건을 마련 하여야 한다.
3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 밖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 및 평가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 하여야 한다.
4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의 교육훈련 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 하고, 학습근로자가 자신의 교육훈련 성과를 관리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여야 한다.
5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교육훈련기간 중 학습근로자에게 훈련교재, 실습재료, 개인용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 하여야 한다.
6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내부평가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라. 제출서류 목록

구분	번호	제출서류	제출방법
참여신청시 입력·첨부	서식1,2	지정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전산입력
	서식3	신청기업 확인서(서식)	전산첨부
	서식4	기업-공동훈련센터 협약서 (공동훈련센터형만 해당)	전산첨부
현장심사시 확인		기타 증빙자료 (신용등급, 직원 고용보험 가입명부, 기업 현장교사 후보 자격, 유사훈련 참여, 안전·보건 교육 이수증, 우량기업 증빙자료 (청년친화 강소기업, 강소기업, Best HRD기업, 공공기관, 명장기업, 기능한국인 기업, 우수숙련기술자기업, 숙련기술전수자 기업, 숙련기술모범사업체, 월드클래스, 우수기업연구소(ATC, ATC+), 글로벌 강소기업) 등)	전산 또는 현장 확인 (필요시 증빙 가능)

- (기타 증빙자료) 신용등급 등 기업이 전산 확인 정보보다 더 유리한 자료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제출 가능

마. 신청 후 진행과정

- (노동관계법 위반여부 사전조회)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지정 가능
 - ①채불사업주 명단공개 사업주, ②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된 내용과 관련된 사업장, ③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인정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여부 사전 조회
- (서류심사)

구분		기 준
대분류	소분류	
인력 양성에 대한 의지	훈련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 일 것. 다만, 학위취득을 위한 과정은 최대 4년까지 훈련가능 ○ 과정 및 자격 수준별 최소훈련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형 과정 : L2 400시간, L3 600시간, L4~L6 800시간 - 기업형 과정 : 600시간 ※ 향후 관련 법령, 규정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훈련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형 과정 :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 시간은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25이상이고 100분의 75 이하일 것

구분		기 준
대분류	소분류	
		- 기업형 과정 : 도제식현장교육훈련(OJT) 시간은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50이상이고 100분의 80이하일 것
	근로시간	○ OJT를 포함한 학습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50조) ※ 그 외 근로시간(탄력적 근로시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훈련실시	○ 훈련과정 인정 후 10일 이내 훈련실시 동의 여부 ※ 재학단계는 제외
	교육연수	○ 훈련과정 개발신청 전일까지 기업현장교사 교육 연수 수료 동의 여부 ○ 훈련과정 개발완료 전 HRD담당자 교육 연수 수료 동의 여부
	기업 여건의 적절성 (보완 불가)	<p>임금체불</p> <p>○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부적격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p> <p>산재다발</p> <p>○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부적격</p> <p>행정처분</p> <p>○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부적격</p> <p>신용등급</p> <p>○ 신용정보회사가 생성한 기업신용등급이 최하위에서 두 번째 등급 이상일 것</p> <p>상시 근로자 수</p> <p>○ 단독기업형 학습기업은 50명, 공동훈련센터형 학습기업은 5명 미만 시 부적격</p>

- (현장심사) 공단과 일정 협의를 거쳐 CEO 인터뷰 및 훈련실시 예정 장소를 확인하는 현장심사 실시

구분	내용
시기	○ 신청기업과 일정을 협의하여 결정
대상	○ 서류심사 통과 기업
현장심사단	○ 기본요건 : 직종전문가 1명 이상 포함한 외부전문가 2인 + 공단 직원 1인 등 3인 이상으로 구성

구분	내용
	※ 외부전문가 인적사항은 현장심사 당일까지 비공개 사항 ※ 해당 심사 관련 이해관계자는 외부전문가 위촉 시 배제
심사내용	① 증빙 서류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 특히, CEO의 일학습병행에 대한 이해도 및 인력개발 의지, 훈련 인프라 구축 상태 등 중점 확인 ② 심사지표에 따른 현장확인 및 배점 진행 - 70점 이상 득점시 ‘적합’ 판정 - 우량기업의 경우 심사 시 우대 [우량기업 판단 기준] 1. 상시근로자 50인 이상(HRD-Net 조회기준 또는 지정신청일을 포함하여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수), 신용등급 B이상인 기업 ※ 상기 두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우량기업으로 판단 2. 청년친화 강소기업, 강소기업, Best HRD기업, 공공기관, 명장기업, 기능한국인기업, 우수숙련기술자기업, 숙련기술전수자기업, 숙련기술모범사업체, 월드클래스, 우수기업연구소(ATC, ATC+),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기업 → 상기 우량기업 판단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우량기업으로 인정. ※ 단, 각종 정부 인증 사항의 경우 학습기업 참여신청일 기준 유효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한 학습기업 최소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3. 훈련종목이 요양보호_L2, 의료코디네이터_L3, 사회복지서비스_L3, 사회복지서비스_L5, 수동용접(CO2용접)_L2, 수동용접(CO2용접)_L4, 수동용접(가스텅스텐아크용접)_L2, 수동용접(가스텅스텐아크용접)_L4, 수동용접(가스메탈아크용접)_L2, 수동용접(가스메탈아크용접)_L4, 자동용접(로봇용접)_L2, 자동용접(로봇용접)_L4(총 12개 직종)인 기업은 상기 우량기업 판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우량기업으로 불인정(일학습병행 참여는 가능) [우량기업 심사 우대사항] ○ ‘유사훈련 실시경험’, ‘장기근속 현황’, ‘인적 인프라 현황’, ‘안전·보건 관리 적정성(도제 제외)’ 등 심사지표 만점 부여 <별첨 3-2 참조> ※ 시범사업의 경우, 별도 계획에 따름 ③ 심사결과는 현장심사 체크리스트 및 채점표(합의채점)에 작성
유의사항	○ 훈련장소에 직접 접근이 가능한 경우만 심사 진행

- (학습기업 지정) 현장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지정여부를 판단

3. 기업 지원내용

□ 학습기업 훈련과정 적용기준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35조(훈련비 등 지원기준)]

* 세부 지원내용은 교육훈련과정 구상 내용에 따라 다르며, 향후 제도 변경 등에 따라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참고) 일학습병행 훈련비 등 지원기준 [별표 4]

① 지원금액

① 훈련비(도제식현장교육훈련, 사업장 외 교육훈련)

○ 일학습병행 훈련비는 「훈련단가 × 지원율 × 훈련시간 × 인원」로 산정하며, 훈련단가와 지원율은 다음과 같다.

○ 시간당 훈련단가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사업장 외 교육훈련
4,000원	6,500원

* 현장외교육훈련비는 고등학교 재학생 신분의 학습근로자의 경우 미지원. 단, 산업계주도형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훈련의 경우에는 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율 : 기준 지원율(100%)에 아래 항목별로 해당하는 1개의 지원율을 선택하여 합산

항목	기준	지원율	비고
훈련대상	재학생 단계	50%	* 학위연계형 우대지원율 - 1~2년차 50%, 3년차 30%, 4년차 10% 적용 - 학교 자율적으로 자부담 도입
	재직자 단계	-	
훈련종류	산업형 과정	20%	Off-JT 훈련에 한함
	기업형 과정	-20%	
훈련장소	공동훈련센터형	40%	Off-JT 훈련에 한함
	단독기업형	-	
훈련직종	우대직종	30%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일반직종	-	
기업규모	중소기업	-	상시 1,000인 이상 * 단, 재학생단계 및 고숙련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은 100% 지원
	대기업	-30%	

② 숙박비

○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훈련비용(훈련비) 외에 식비는 1일 5,000원, 숙박비는 1일 14,000원까지 지원(월 330,000원 한도)

○ 단, 고등학교 재학생 신분의 학습근로자의 경우 미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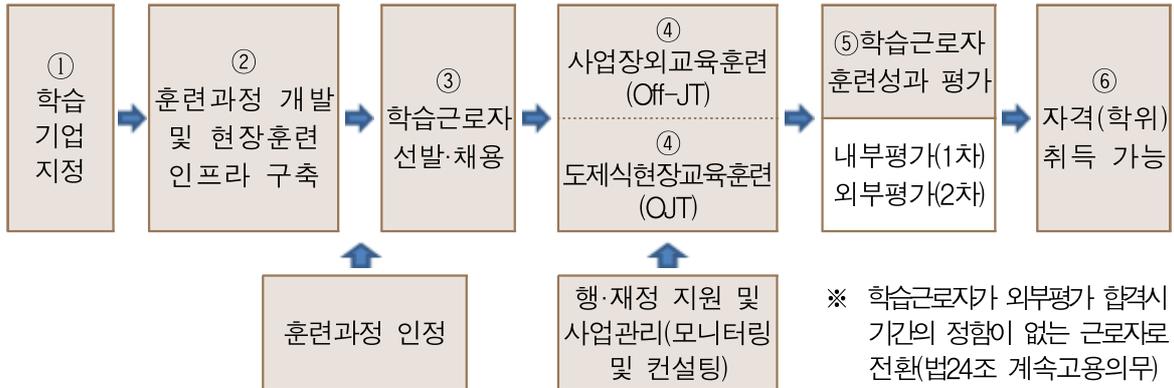
- ③ 훈련장려금 :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은 지원하지 않음. 단, 재학생단계, 고속련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은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 학습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지급하되, 고속련 일학습병행에 대하여는 학습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급
 -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에 합격하고, 장려금 신청일 당시 학습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학습근로자 1인당 ‘전체 훈련기간(월) × 20만원’ 의 훈련장려금을 학습기업에 추가 지급
 - 최대 36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되, 고속련 일학습병행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지원함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병행에 참여 하는 학습기업의 경우에는 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

② 지원기준

- 훈련비(도제식현장교육훈련, 사업장 외 교육훈련)
- 연 900시간 한도로 지원
 - 능력단위별 내부평가와 연계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
 - 능력단위별 내부평가를 합격한 경우 해당 능력단위의 계획시간을 모두 지급
 - 능력단위별 내부평가를 불합격한 경우 해당 능력단위의 출석시간만 지급
 - 능력단위별 내부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지원하지 않음
- * 단, 재직자 단계의 학위취득을 위한 훈련과정의 사업장 외 교육훈련비 지급기준은 공단이 별도로 정한다.

4. 지정 이후 사업수행 절차

【 일학습병행 프로세스 】



① 기업지정 :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가 지정

② 훈련준비

-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양성교육)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에 대한 해당분야 직무교육 실시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해당 교육 담당

- (학습근로자 모집·채용)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모집·선발하여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전반적인 절차

* 학습근로계약은 훈련과정의 참여자가 훈련생으로서의 성격과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병존하므로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 | |
|-------------------|--|
| 1) 일학습병행의 목표 및 방법 | 2) 일학습병행의 기간 |
| 3) 일일 학습근로시간 | 4)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내용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근무장소 및 종사업무 등) |

학습근로자 채용 시 유의 사항

- ✓ 일학습병행법 제22조(학습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학습근로자가 학습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 학습근로계약은 종료된다.
- ✓ 또한 학습근로자가 학습근로계약기간 내 외부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습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2회까지 학습근로계약을 연장하여야 한다. 연장 기간을 합한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으로 지정된 이후에 훈련개시 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채용된 자를 학습근로자로 지정 가능

학습근로자 채용 시 유의 사항

- ✓ 학습근로자는 훈련직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는 사람으로 선발하는 것이 원칙
- ✓ 동일인이 기수료한 동일과정(동일수준)에 재참여는 금지

③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기업이 체계적으로 현장훈련 및 사업장외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NCS 기반 훈련 설계
-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기업별 현장훈련에 적합한 학습도구 제작을 지원하고 컨설팅 실시
 - * 공단 훈련과정개발센터(워크숍 형태로 직접 개발) 등에서 개발·제작 지원

④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인정 : 개별 기업에 맞추어 개발된 훈련 과정이 일학습병행의 인정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공단에서 심사 후 고용노동부에서 인정

⑤ 훈련 실시 : 인정받은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따라 OJT 및 Off-JT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 지원

- * 매월 HRD-Net으로 비용신청 시 공단에서 검토 후 지원

⑥ 훈련 성과 평가 : 기업 내부평가(1차)와 외부평가(2차)를 통해 학습근로자의 직무능력 습득정도를 평가

- * 대학연계형 훈련과정은 해당 제도 및 학교의 규정에 따라야 함

⑦ 자격 취득 가능 : 외부평가(2차) 결과에 따라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 가능

⑧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참여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 외부평가에 최종 합격한 경우 법 제2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함. 단, 사업주는 훈련과정을 이수한 학습근로자를 외부평가 최종합격 이전이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음

5. 주의사항

□ 일학습병행법 시행('20.8.28.)에 따른 주요 유의사항 안내

① 학습근로자 계속고용의무(제24조) 및 위반시 불이익(제42조)

- 사업주는 '20.8.28. 이후 실시*된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함

* 법 시행일 이전부터 실시되는 일학습병행 과정에 참여한 학습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에 유의

제24조(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습근로자 계속고용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및 자격발급 관련 수수료 발생(제37조)

제37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외부평가를 받으려는 사람
2. 제31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③ 기업현장교사 결격사유(제19조)

제19조(기업현장교사의 지정·운영) ④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업현장교사가 될 수 없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

제3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제35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5조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2. 제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4.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청소년보호법 제2조]

-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별첨4 참조)는 청소년 대상 훈련에 참여 불가

□ **학습기업 지정취소 요건** [법 제14조, 시행규칙 별표1]

○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일학습병행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일학습병행 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각 2분의 1을 합산하되, 그 합산한 일학습병행 정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으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해당 처분이 일학습병행 정지인 경우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면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일학습병행 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개별기준)

위반사항	주요내용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 기업의 지정을 받은 경우	거짓, 부정지정	법 제14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지정요건 미달	법 제14조 제1항제2호				
1)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영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체불·산재다발 공표기업, 인정제한 기업		지정 취소			
2)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영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영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		시정 명령	지정 취소		
3)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영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영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단독기업형 50인, 공동훈련센터형 20인 이상		시정 명령	일학습 병행 정지 1년	일학습 병행 정지 2년	지정 취소
4)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영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영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용등급 최하에서 두 번째등급 이상		시정 명령	일학습 병행 정지 3개월	일학습 병행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5) 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업현장교사, 실무담당자 각 1인 이상		시정 명령	일학습 병행 정지 6개월	일학습 병행 정지 1년	지정 취소
6)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설, 장비		시정 명령	일학습 병행 정지 3개월	일학습 병행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일학습 병행 운영을 지속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년내 임금체불 2회 이상 유죄/ 산재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사업장	법 제14조 제1항제3호	지정 취소			

□ 추가 훈련 제한 요건 [규정 제5조]

- 훈련실시 이력이 1년 이상인 학습기업이 학습근로자 중도탈락 등 훈련성과가 미흡한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준(학습근로자 중도탈락률 50% 이상 등)에 따라 추가훈련을 제한할 수 있다.
- 훈련성과 미흡기관 지정 기준 및 시점 등은 공단이 별도로 안내

□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2조, 영 제19조, 시행령 별표]

○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해당 위반행위로 이 법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과태료·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습근로계약의 내용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학습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 제2항 제1호	200	300	500
나.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습근로자 계속고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	1,000	2,000	3,000
다. 법 제25조에 따른 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아래 참고)	법 제42조 제2항제2호	150	200	300
라.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3호	150	200	300
마.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현장 조사 등의 지도·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4호	300	400	500

[별첨 1]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연락처

기관명	관할지역	주 소	연 락 처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02512)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Fax: 02-2137-0478	02-2137-0471
서울서부지사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중구, 종로구	(03302) 서울 은평구 진관3로 36 *Fax: 02-461-8301	02-2024-1761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07225)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Fax: 02-6499-7115	02-6907-7116
서울강남지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0619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2 15층 *Fax: 02-6499-7115	02-2161-9144
강원지사	강원도 춘천시,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홍천군, 경기도 가평군	(24408) 강원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Fax: 033-248-8540	033-248-8524
원주기업인재 혁신센터	강원도 원주시, 영월군, 횡성군	(26354) 강원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1007호	033-810-2570
강원동부지사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정선군, 평창군	(25440) 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Fax: 033-650-5729	033-650-5746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연제구, 중구, 경상남도 양산시, 김해시, 밀양시	(46519)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Fax: 051-333-3751	051-330-1922
부산남부지사	부산광역시 남구, 금정구, 동래구, 수영구, 영도구, 해운대구, 기장군	(48518) 부산 남구 신선로 454-18 *Fax: 051-621-7385	051-620-1932
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51519)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Fax: 055-212-7219	055-212-7233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44538) 울산 중구 종가로 347 *Fax: 052-276-9034	052-220-3252
경남서부지사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거창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52733) 경남 진주시 남강로 1689	055-791-0715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시, 고령군, 청도군	(42704)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대구비즈니스센터 201호 *Fax: 053-580-2349	053-580-2337
경북지사	경상북도 안동시, 문경시, 상주시, 영주시, 군위군, 봉화군, 영양군,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36616)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Fax: 054-855-2001	054-840-3042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37580)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Fax: 054-230-3250	054-230-3232
경북서부지사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	(39371)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 253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2층 *Fax: 0505-174-2141	054-713-3014

기관명	관할지역	주 소	연 락 처
경인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과천시,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화성시, 안산시	(16626)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Fax: 031-249-1249	031-249-1282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21634)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Fax: 032-820-8680	032-820-8644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11801) 경기 의정부시 바대논길 21 5층 *Fax: 031-853-9387	031-850-9146
경기동부지사	경기도 성남시, 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13313)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Fax: 031-750-6210	031-750-6203
경기남부지사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17561) 경기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51-23 *Fax: 0505-174-2280	031-615-9024
경기서부지사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시흥시	(14488) 경기 부천시 길주로 463번길 69	032-719-0822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61008)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대촌동 958-18) *Fax: 062-944-1788	062-970-1784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5485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Fax: 063-210-9251	063-210-9231
전남지사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보성군	(57948)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Fax: 061-725-5097	061-720-8541
전남서부지사	전라남도 목포시, 강진군,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군	(58604)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Fax: 061-288-3310	061-288-3314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63220)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Fax: 0505-174-2190	064-729-0729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익산시, 고창군, 부안군	(54098) 전북 군산시 공단대로 197 *Fax: 063-452-2090	063-731-5507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35000)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Fax: 042-586-8827	042-580-9124
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괴산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28456)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 *Fax: 043-278-3086	043-279-9032
충남지사	충청남도 천안시, 서산시, 태안군, 아산시, 예산군, 당진시, 홍성군	(3108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상고1길 27 *Fax: 041-620-7630	041-620-7607
세종지사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30128) 세종 한누리대로 296 밀레니엄빌딩 5층	044-410-0814
충북북부지사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27502) 충북 충주시 호암수청2로 14 충주농협 3~4층	043-722-4314

[별첨 2]

일학습병행 복수유형 공동훈련센터

no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1	강원대학교(삼척)	강원 삼척시 중앙로 346 강원대학교 강의동 121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33-570-6875
2	거제대학교	경남 거제시 마전1길 91 본관 산학협력단	055-680-1542
3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기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69 (정왕동) 대학본부 2층 산학협력실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31-496-4673
4	대구대학교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53-850-6743
5	대림대학교	경기 안양시 동안구 임곡로 29 대학본부 3층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31-467-4574
6	동서울대학교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76 6호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31-724-2393
7	동양미래대학교	서울 구로구 경인로 445 대학본부 4층 산학협력단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2-2610-1815
8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경남 양산시 명곡로 321 평생직업교육관 1210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55-370-8351
9	동의과학대학교	부산 부산진구 양지로 54 창조관 408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51-860-3080
10	목원대학교	대전 서구 도안북로88(도안동) 목원대학교 캠퍼스타운 106호	042-829-8137
11	배화여자대학교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1길 34(필운동, 배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2-397-0683
12	부산경상대학교	부산 연제구 고분로 170 부산경상대학교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51-850-1331
13	부천대학교	경기 부천시 신흥로56번길 25 부천대 밀레니엄관 7층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32-580-7952
14	서일대학교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90길 28 서일대학교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2-490-7454
15	순천향대학교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 순천향대학교 인문대학 6428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41-530-1497
16	안산대학교	경기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31-363-7767
17	영진전문대학	경북 칠곡군 지천면 금송로 60 프론티어관 210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54-970-9490
18	우송정보대학교	대전 동구 백룡로 59(자양동) 국제경영센터(E2) 1층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42-629-6941
19	울산과학대학교	울산 남구 대학로 57 산학협력관 IC-206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52-279-3222
20	유한대학교	경기 부천시 경인로 590 (괴안동, 유한대학) 평화관 3층 1303호 P-TECH공동훈련센터	02-2610-0657
21	인덕대학교	서울 노원구 초안산로 12 인관 2층 산학협력단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2-950-7226
22	인천대학교	인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송도동) 인천대학교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32-835-9970
23	인천재능대학교	인천 동구 재능로 178 인천재능대학교 본관 3층 302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32-890-7108

no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24	전주비전대학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35 전주비전대학교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63-220-3904
25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덕암길 10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과학관 101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43-210-8341
26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광주 북구 하서로 85 대학본부 3층 산학협력단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62-519-7220
27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3길 84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HRD센터 산학협력처	054-468-5228
28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인천 미추홀구 염전로 333번길 23 폴리텍대학교 남인천캠퍼스 산학협력관 1층	032-450-0370
29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대구 서구 국제보상로43길 15(평리5동 1495) 산학협력단 403호	053-560-3272
30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대전 동구 우암로 352-21 산학협력단	042-670-0503
31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산단4로 2-69 본관 1층 산학협력처	051-609-6058
32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육합캠퍼스	경기 안성시 공도읍 송원길 41-12 혜음관 1층 산학협력처	031-650-7339
33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부산 북구 만덕대로155번길 99 도서관(2) 1층 산학협력	051-330-7720
34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서울 강서구 우장산로 10길 112 제 2교육관 산학협력처	02-2186-5830
35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서울 용산구 보광로 73(보광동, 238) 제3공학관 1층 산학협력단 교육1팀	02-2001-4842
36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98 본관 2층 산학처 일학습팀	031-739-4023
37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전남 순천시 기적의도서관1길 41 대학본부 산학처	061-720-1520
38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충남 아산시 신창면 행목로 45 본관 1층 산학협력처	041-539-9440
39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대구 동구 팔공로 222 산학협력관 2층 일학습병행센터	053-980-1114
40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강원 원주시 복원로2425번길 73 대학본부 1층 산학협력처	033-741-7150
41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전북 익산시 선화로 579 산학협력관 1층	063-830-3034
42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48번길 56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산학협력단 1층 일학습추진팀	032-510-2153
43	한국폴리텍대학 전남캠퍼스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854-16(상마리 14-1) 산학협력처	061-450-7240
44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경남 진주시 모덕로 299 본관 1층 산학협력처	055-760-2239
45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 51-88 산학협력단 2층 사무실	055-260-1109
46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54(송정동 47번지) 대학본부 산학협력처	043-279-7414
47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	강원 춘천시 우두상리길 68 1공학관 산학협력단	033-250-9718
48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경남 사천시 대학길 46 본관 1층 산학협력처	055-830-3431

no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49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경기 화성시 팔탄면 제암고주로 108 산학협력처 건물	031-350-3241
50	한양여자대학교	서울 성동구 살곶이길 200, 한양여자대학교 행원파크 B161호	02-2290-2775
51	홍익대학교(세종)	세종 조치원읍 세종로 2639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C406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44-860-2152

일학습병행 (재직)공동훈련센터

no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1	ICT폴리텍대학	경기 광주시 순암로 16-26 대학본부 1층 일학습공동훈련센터	031-760-3377
2	경북대학교(상주)	경북 상주시 경상대로 2559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53-537-0430
3	경북전문대학교	경북 영주시 대학로 77 본관3층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54-630-5180
4	공주대학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223-24 산학협력관	041-521-9001
5	광주대학교	광주 남구 효덕로 277 백인관 6층 행정실	062-670-2076
6	구미대학교	경북 구미시 야은로 37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 행정지원팀	054-440-1455
7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경기 파주시 와석순환로172번길 16(동패동 66번지)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031-940-6805
8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	광주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37(소촌동 235번지) 기업교육팀	062-940-3005
9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부산 남구 신선로 454-20 인력개발센터 3층 교육기획처 일학습팀	051-610-3104
10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로(소룡동) 119번지 전북인력개발원	063-472-2505
11	부산과학기술대학 교	부산 북구 시랑로 132번길 88(구포동) 본관 산학협력단	051-330-7381
12	서라벌대학교	경북 경주시 태종로 516 서라벌대학교 본관 듀얼공동훈련센터	054-770-3672
13	제주한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금호관 2층 산학협력단	064-741-6560
14	중부대학교	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101번지 중부대학교 세종관 423호	031-8075-1656
15	창원문성대학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충훈로 91 7호관 206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55-279-5242
16	(사)충북바이오산학 융합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벤처연구센터	043-220-1031
17	캡티브중합기술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7 2층 인재개발팀	063-219-0330
18	포스코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120 포스코 미래창조아카데미	054-220-8081
19	한국SW산업협회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서관 12층	02-2188-6923
20	한국공학대학교	경기 시흥시 엠티브이북로65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미래인재관 707호	031-8041-1466
21	한국기술교육대학 교	충남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18 실학관 7층 704호	041-560-1251
22	한국상용SW협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2 한신IT타워 1309호	02-6215-2600
23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강원 강릉시 남산초교길 121(노암동 779) 본관 1층 산학협력처	033-610-6104

no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24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캠퍼스	대구 논공읍 논공로 226 산학관 산학협력처 2층	053-610-6641
25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안로 112번길 48 본관 2층 산학협력단	041-746-7331
26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경북 영주시 가흥로 2 일학습공동훈련센터	054-639-4287
27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울산 중구 산전길 155(동동 81번지) 함월관 1층 산학협력처	052-290-1505
28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로 162 산학협력관 2층	054-288-2279
29	한국해양대학교	부산 영도구 태종로 727 한국해양대학교 A9 50주년기념관 2층 행정실	051-410-5241
30	한밭대학교	대전시 유성구 동서대로 125 s5동 602호 산학연합동관	042-821-1249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기관

no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1	강경상업고등학교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220 강경상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41-980-8751
2	강릉중앙고등학교	강원 강릉시 강변로 422 강릉중앙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3-610-6810
3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서울 노원구 공릉로 264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2-2289-1725
4	경기상업고등학교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136 경기상업고등학교 도제부	02-6362-1250
5	경기스마트고등학교	경기 시흥시 정왕천로 404 경기스마트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70-8708-2188
6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경기 시흥시 금오로 103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1-310-9020
7	경기폴리텍고등학교	경기 군포시 고산로 524 경기폴리텍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1-390-4690
8	경기항공고등학교	경기도 광명시 새터안로 20 (광명동)	02-2613-0024
9	경남공업고등학교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175번길 22 경남공업고등학교 중관 2층 도제교육부	051-607-7496
10	경남자동차고등학교	경남 진주시 진산로 378 경남자동차고등학교 1층 도제학교부	055-758-6865
11	경북공업고등학교	대구 중구 남산로 20 경북공업고등학교 전자과	053-235-8565
12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경북 김천시 아포읍 아포대로 1053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4-429-0571
13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경북 경산시 자인면 일연로 21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3-859-3845
14	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	경북 구미시 해평면 강동로 1654 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4-474-2592
15	경북하이텍고등학교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4 경북하이텍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70-4612-8025
16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경북 영천시 금호읍 교대길 8-18 금호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4-333-3612
17	경상공업고등학교	대구 남구 대경길 151 경상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3-235-8919
18	경성전자고등학교	부산 서구 꽃마울로 25 경성전자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1-231-5201
19	경주공업고등학교	경북 경주시 금성로 209 경주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4-778-7850
20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경북 경주시 시동로 90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70-8693-3142
21	경주정보고등학교	경북 경주시 충효7길 19 경주정보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4-742-8962
22	계룡디지텍고등학교	대전 동구 소량길 64 계룡디지텍고등학교 제2교무실 도제교육부	042-630-6052
23	광양하이텍고등학교	전남 광양시 광양읍 신재로 106 광양하이텍고등학교 도제부	061-760-3085
24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서울 노원구 광운로1길 24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컴퓨터전기과	02-918-7761(113)
25	광주공업고등학교	광주 북구 설죽로315번길 14 광주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62-570-2920
26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7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아동 2층 도제교육부	062-970-0592
27	구림공업고등학교	전남 영암군 군서면 왕인로 453 구림공업고등학교 기계과실(도제부)	061-471-6313
28	군자디지털과학고등학교	경기 시흥시 군자로487번길 54 군자디지털과학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1-489-8090

no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29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53 도제부	031-390-5322
30	금정전자고등학교	부산 금정구 서금로 75 금정전자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1-540-0180
31	금파공업고등학교	광주 북구 금호로 80 금파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62-605-6269
32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경기 김포시 봉화로 69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1-999-3791
33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경남 김해시 구지로 109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도제센터	055-340-7460
34	논산공업고등학교	충남 논산시 시민로 365 논산공업고등학교 도제부	070-7813-8142
35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충남 논산시 시민로 197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도제부	070-7602-3830
36	당진정보고등학교	충남 당진시 운학길 5 당진정보고등학교 도제부	041-351-9030
37	대광고등학교	부산 사하구 동매로 135 대광고등학교 도제부	051-207-1879
38	대구공업고등학교	대구 동구 대현로 135 대구공업고등학교 금형도제관	053-231-8179
39	대구과학기술고등학교	대구 서구 당산로 228 대구과학기술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3-231-9085
40	대구관광고등학교	대구 동구 동북로71길 37 대구관광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3-235-9713
41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대구 달서구 용산로 113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3-231-8562
42	대구하이텍고등학교	대구 달서구 학산남로 50 대구하이텍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3-231-8641
43	대양고등학교	부산 남구 지계골로 128-27 대양고등학교 2층 도제교육부	051-640-0611
44	대전생활과학고등학교	대전 대덕구 동산초교로63번길 12 대전생활과학고등학교 도제지원센터	042-629-1369
45	대전전자디자인고등학교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939 대전전자디자인고등학교 도제부	042-611-8360
46	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	대구 북구 관음로 303-12 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 본관 4층 도제교육부	053-235-9163
47	대진전자통신고등학교	부산 금정구 수림로 92 대진전자통신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1-580-5123
48	대한미용사회(사)	서울 서초구 방배로 123 대한미용사회(사) 도제학교 공동훈련센터	02-3474-7221
49	덕일전자공업고등학교	서울 구로구 서해안로21길 5-12 덕일전자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2-2613-0515
50	동명공업고등학교	부산 남구 신선로 410 동명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1-610-2580
51	동아공업고등학교	부산 사하구 괴정로260번길 79 동아공업고등학교 근면관 1층 특성화교육부	051-200-3832
52	동의공업고등학교	부산 부산진구 양지로 50 동의공업고등학교 실습동 2층 도제부	051-811-7567
53	두원공업고등학교	경기 안성시 미양면 미양로 727 두원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1-678-0213
54	마산공업고등학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학교단지로 53 마산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5-293-5831
55	목포공업고등학교	전남 목포시 용당로 100 목포공업고등학교 삼호동 2층 도제부교사실	061-800-7144
56	미래고등학교	강원 원주시 고문골길 54 도제교육부	070-7606-5943
57	부산공업고등학교	부산 남구 수영로196번길 80 부산공업고등학교 기계동 2층 도제교육부	051-607-3955
58	부산관광고등학교	부산 서구 천마로 52 부산관광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70-4944-9521

no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59	부산디지털고등학교	부산 중구 망양로 356 부산디지털고등학교 2층 도제부	051-460-0226
60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 동래구 금강로59번길 51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공동훈련센터	051-606-0330
61	부산정보고등학교	부산 부산진구 화지로 24 부산정보고등학교 도제부	070-4672-2060
62	부여전자고등학교	충남 부여군 임천면 충절로 1027 부여전자고등학교 교무실	070-4268-6049
63	부원고등학교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8857 부원고등학교 해금관 2층 도제교육부	031-645-6257
64	부일전자디자인고등학교	부산 사하구 감천로73번길 36 부일전자디자인고등학교 5층 도제교육부	051-293-5733
65	부천공업고등학교	경기 부천시 경인로120번길 82 부천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2-610-7501
66	부평공업고등학교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194 부평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2-627-0142
67	분당아람고등학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153(야탑동) 분당아람고등학교 도제부	031-706-0292
68	삼일고등학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392번길 44-28 삼일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1-8065-8941
69	삼일공업고등학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392번길 44-60 삼일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1-250-4761
70	상서고등학교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107 상서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3-235-9666
71	상일미디어고등학교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219길 61 상일미디어고등학교 산학협력부	02-428-0732(320)
72	서부산공업고등학교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768번길 115 서부산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1-309-3151
73	서산공업고등학교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운암로 1072-12 서산공업고등학교 실습동 4층	041-689-6851
74	서울공업고등학교	서울 동작구 대방동1길 46 서울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2-2025-6725
75	서울디지텍고등학교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12길 27 서울디지텍고등학교 소프트웨어부	02-798-3641(211)
76	서울신정고등학교	서울 강서구 등촌로13아길 20 서울신정고등학교 제2교무실 관광도제부	02-2644-3543(190)
77	서울아이티고등학교	서울 노원구 섭발로 299 서울아이티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70-7606-4840
78	서일문화예술고등학교	서울 종로구 지봉로17길 49 서일문화예술고등학교 베이커리학과.도제교무실	02-763-6245
79	성동공업고등학교	서울 중구 다산로 290 성동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70-8685-7755
80	성일정보고등학교	경기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77번길 10 성일정보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1-720-1342
81	세명컴퓨터고등학교	서울 은평구 통일로92가길 33 세명컴퓨터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2-354-5814
82	세정고등학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로 88-12	051-860-1500
83	수원공업고등학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54 수원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1-307-9450
84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51번길 16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도제부	031-218-4121
85	순천효산고등학교	전남 순천시 삼산로 104 순천효산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61-750-9559
86	승의과학기술고등학교	광주 남구 오방로 34-13 승의과학기술고등학교 도제부	062-606-5856
87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서울 은평구 은평로6길 16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2-385-3451(227)
88	양영디지털고등학교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386번길 35 양영디지털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1-778-2332

no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89	영광공업고등학교	전남 영광군 영광읍 월현로 34 영광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61-872-0075
90	영남공업고등학교	대구 수성구 교학로 96 영남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3-235-8775
91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충남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351번길 21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전자관 3층 도제교육부	041-404-0054
92	용산철도고등학교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4 용산철도고등학교 도제교육부 3층	02-6905-7754
93	울산공업고등학교	울산 남구 중앙로204번길 49 울산공업고등학교 도제부	070-8889-0842
94	은평메디텍고등학교	서울 은평구 진관2로 57-57 은평메디텍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70-4020-6818
95	의정부공업고등학교	경기 의정부시 가능로 57 의정부공업고등학교 자동차과	031-820-9749
96	이리공업고등학교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36길 35 이리공업고등학교 도제부	063-722-3034
97	인덕과학기술고등학교	서울 노원구 초안산로 12 인덕과학기술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2-902-2558
98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545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2-860-0160
99	인천바이오과학고등학교	인천 연수구 용담로 12 인천바이오과학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2-899-1661
100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21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2-627-3776
101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인천 연수구 합박피로 103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2-820-6559
102	인천세무고등학교	인천 서구 청마로 52 인천세무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70-5004-3648
103	인천소방고등학교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165 인천소방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2-760-0270
104	인천재능고등학교	인천 동구 재능로 178 인천재능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2-890-7655
105	인천정보과학고등학교	인천 중구 참외전로 192 인천정보과학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2-770-0753
106	인평자동차고등학교	인천 부평구 화랑로 111 인평자동차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2-517-0721(400)
107	장성하이텍고등학교	전남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72 장성하이텍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61-399-5634
108	장항공업고등학교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서로 77 장항공업고등학교 도제부	041-955-5654
109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	전남 화순군 화순읍 실고길 44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 도제부	061-370-7556
110	전남미용고등학교	전남 나주시 영산포로 182-9 전남미용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61-338-8970
111	전남에너지고등학교	전남 영암군 신북면 황금동로 16-13 전남에너지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61-473-7184
112	전북하이텍고등학교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41-1 전북하이텍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70-4889-1650
113	전주공업고등학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산로 101 전주공업고등학교 자동차과 도제교육부	063-210-9515
114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95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도제부	063-240-1771
115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충북 제천시 봉양읍 팔송로 84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IT전자과 사무실	043-647-4395
116	제천산업고등학교	충북 제천시 단양로10길 160 제천산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43-646-4196
117	조일고등학교	대구 동구 신덕로 136-11 조일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3-235-9073
118	증평공업고등학교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180 증평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43-835-0039

no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119	진도실업고등학교	전남 진도군 진도읍 교동3길 10 진도실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61-544-1932
120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경남 진주시 공단로43번길 25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공동훈련센터	055-790-1591
121	창원공업고등학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 410 창원공업고등학교 산학일체형 도제부	070-4788-4846
122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19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70-7860-8403
123	천안공업고등학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황5길 17 천안공업고등학교 기계과	041-590-9480
124	천안상업고등학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43-9 천안상업고등학교 취업지원부 도제담당	041-413-6562
125	청주공업고등학교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7 청주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43-229-5485
126	청주하이텍고등학교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1137번길 59 청주하이텍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43-299-1752
127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강원 춘천시 후석로462번길 53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3-258-8632
128	충북공업고등학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1205번길 52 충북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43-230-5207
129	충주공업고등학교	충북 충주시 형설로 120 충주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43-841-1459
130	평촌경영고등학교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186 평촌경영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70-5106-1745
131	평촌과학기술고등학교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갈산로16번길 13 평촌과학기술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31-390-4840
132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341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4-612-8053
133	포항홍해공업고등학교	경북 포항시 북구 홍해읍 동해대로1475번길 42 포항홍해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54-614-0882
134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	경북 영주시 영봉로 28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 도제부	054-716-2672
135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경기 시흥시 오이도로 49-6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한국금형기술교육원 본관 3층	02-783-1711
136	한봄고등학교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93 한봄고등학교 도제교육부	070-7860-7467
137	해운대공업고등학교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469번길 96 해운대공업고등학교 공동훈련센터	051-792-7821
138	홍성공업고등학교	충남 홍성군 결성면 구성남로 55 홍성공업고등학교 도제부	041-642-0962
139	휘경공업고등학교	서울 동대문구 겹재로 21 휘경공업고등학교 4층 도제교육부	02-2230-9951

P-TECH 공동훈련센터

no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1	강동대학교	충북 음성군 감곡면 대학길 278 강동대학교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43-879-3350
2	두원공과대학교	경기 안성시 죽산면 관음당길51 두원공과대학교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31-3056-7182
3	경남정보대학교	부산 사상구 주례로 45 민석기념관 3층 P-TECH 공동훈련센터	051-320-1328
4	군장대학교	전북 군산시 성산면 군장대길 13 12번 건물 P-TECH 공동훈련센터	063-450-8327
5	동강대학교	광주 북구 동문대로 50(동강대학교) 10번건물 산학협력관 P-TECH 공동훈련센터	062-520-2486
6	동남보건대학교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74번길 50 4층 산학협력단 P-TECH 공동훈련센터	031-249-6352
7	삼육보건대학교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82 S관 204호 산학협력단 P-TECH 공동훈련센터	02-3407-8566
8	서영대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서영로 1(서영대학교) P-TECH 공동훈련센터	062-520-5114
9	수성대학교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28길 15 P-TECH 공동훈련센터	053-749-7012
10	신안산대학교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135 (초지동, 신안산대학교) 도서관 3층 P-TECH 공동훈련센터	031-490-9005
11	연성대학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37번길 산학협력단	031-441-1056
12	영남이공대학교	대구 남구 현충로 170 본관 6층 P-TECH 공동훈련센터	053-650-9579
13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100 본관 310호 산학협력단 P-TECH 공동훈련센터	032-870-2741
14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전북 김제시 백학제길 154 P-TECH 공동훈련센터	063-540-7615

IPP형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no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1	가톨릭관동대	강원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 가브리엘관 108호 가톨릭관동대학교 IPP형 일학습병행제사업단	033-649-7352
2	경남대학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월영동) 경남대학교 창조관 209호 KU-IPP사업단	055-249-2094
3	경성대학교	부산 남구 수영로 309 경성대학교 건학기념관(30호관) 508-1호 IPP사업단 행정실	051-663-5614
4	광운대학교	서울 노원구 광운로 20(월계동 447-1) 광운대학교 복지관 206호 KW-IPP 공동훈련센터	02-940-8212
5	남서울대학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학로 91 남서울대학교 IPP사업단	041-580-3528
6	대구한의대학교	경북 경산시 한의대로 1 대구한의대 삼성캠퍼스 9호관 3층	053-819-7717
7	동국대학교	서울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원흥관 F317	02-450-0572
8	동덕여자대학교	서울 성북구 화랑로13길 60 동덕여자대학교 IPP사업단	02-940-4871
9	동서대학교	부산 사상구 주례로 47 동서대학교 스텐턴플라자 3층 IPP사업단	051-320-4869
10	동신대학교	전남 나주시 건재로 185 동신대학교 정보전산센터 109호	061-330-6471
11	동의대학교	부산 부산진구 엄광로 176 동의대학교 자연과학관 2층 226호	051-890-4484
12	명지대학교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명지대학교 체육문화관 6202호	031-324-1228
13	목포대학교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목포대학교 교수회관 B17 3층 303호	061-450-6480
14	배재대학교	대전 서구 배재로 155-40(도마동) 배재대학교 IPP사업단	051-509-5311
15	서원대학교	충북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377-3(모충동) 서원대학교 인문사회관 704호	043-299-8216
16	신라대학교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700번길(괘법동) 신라대학교 화랑관 1층	042-629-7185
17	영산대학교	경남 양산시 주남로 288(주남동) 영산대학교 문화관 3316호	055-380-9602
18	인제대학교	경남 김해시 인제로 197 인제대학교 늘빛관 217호	055-320-3624
19	인하대학교	인천 남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IPP듀얼공동훈련센터	032-860-9297
20	한국교통대학교	충북 충주시 대학로 50 한국교통대학교 IPP사업단	043-849-1713
21	한남대학교	대전 대덕구 한남로 70 계의돈기념관(이과대학) 1층 18호 한남대학교 IPP일학습사업단	042-722-2331
22	한라대학교	강원 원주시 흥업면 한라대길 28 한라대학교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단	033-760-1904
23	한성대학교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상상관 402호 IPP사업단	02-760-8019
24	한신대학교	경기 오산시 한신대길 137(양산동) 한신대학교 IPP사업단	031-379-0878
25	협성대학교	경기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72 이공관 105호 IPP 센터	031-299-0995

전문대 재학생단계 공동훈련센터

no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1	경인여자대학교	인천 계약구 계양산로 63 경인여자대학교 전문대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32-540-0041
2	동원대학교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26 전문대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31-760-0185
3	서정대학교	경기 양주시 은현면 화합로 1049-56 전문대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31-860-5266
4	신성대학교	충남 당진시 정미면 대학로1 신성대학교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41-350-1537
5	전남도립대학교	전남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으로 152 전문대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061-380-8576

첨단 공동훈련센터

no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1	강남대학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일학습병행	031-280-3664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

연번	기관명	주소	연락처
1	강원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강원 춘천시 중앙로 110	033-256-9551
2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천 남동구 은봉로 60번길 46, 인천상공회의소 5층	032-810-2849
3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경기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30번길 10, 중앙빌딩 신관 2층	031-8014-5497
4	대전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대전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공회의소 6층	042-719-3055
5	충북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 9, 한국교직원공제회 충북지부 3층	070-4469-3311
6	충남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충남 예산군 삼교읍 의향로 359	041-404-1395
7	세종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세종 한누리대로 2003 펠리체타워 3404호	044-414-9269
8	대구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대구 동구 동대구로 457, 대구상공회의소 2층	053-222-3158
9	경북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304호	054-463-3362
10	부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051-990-7057
11	울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울산 남구 돌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1층	052-228-3172
12	경남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54,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2층	055-261-8308
13	광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광주 서구 대남대로 465, 상공회의소빌딩 4층 403호	062-350-5819
14	전남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빌딩 6층	061-273-0991
15	제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제주 제주시 청사로1길 18-4 제주상공회의소 1층	064-757-2164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없는 지역(서울, 전북지역)은 해당지역 관할
공단 지부·지사로 추천서 발급 요청

특화업종(특구)지원센터

no	기관명	주 소	연락처
1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6, IT벤처타워 서관 12층	02-2188-6988
2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3길 7	053-248-8116
3	경북동부경영자협회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11, 대운빌딩 1층	054-278-5143
4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대전 유성구 테크노9로 35, IT전용벤처타운 5층	042-368-9721
5	경기섬유산업연합회	경기 양주시 평화로 1215,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202호	031-8064-1085
6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광교비즈니스센터 1층	031-8064-1085

[별첨 3-1]

◆ 학습기업 지정 평가지표(참여유형 공통)											
분류	중분류	세부 항목	지표 세부내용								
인력 양성에 대한 의지 (45)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의지 (45)	일학습 병행에 대한 이해도 및 참여의지 (40)	□ 배점기준 / 확인방법 / 사후관리 ① 전담자(기업현장교사 · HRD담당자) 선발 및 관리								
			<table border="1"> <tr> <td>매우우수</td> <td>우수</td> <td>보통</td> <td>미흡</td> </tr> <tr> <td>10점</td> <td>7점</td> <td>3점</td> <td>0점</td> </tr> </table>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10점	7점	3점	0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10점	7점	3점	0점					
- (확인방법) CEO 인터뷰* 내용,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사내우수인력 투입 가능성, 전담자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계획 등 전담자 선발·관리에 대한 계획을 확인 - (사후관리)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 이수 여부 확인 후 훈련과정 인정 * 단, 불가피한 경우 HRD 또는 인사권자 인터뷰로 대체 가능											
② 학습근로자 선발 및 관리											
			<table border="1"> <tr> <td>매우우수</td> <td>우수</td> <td>보통</td> <td>미흡</td> </tr> <tr> <td>10점</td> <td>7점</td> <td>3점</td> <td>0점</td> </tr> </table>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10점	7점	3점	0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10점	7점	3점	0점								
			- (확인방법) CEO 인터뷰* 내용,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학습근로자 임금수준 등 대우 및 훈련으로 인해 늘어날 학습근로자의 부담을 어떻게 관리하고 훈련 완료한 학습근로자를 어떻게 활용할지 등 전반적인 관리·활용 방안,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 및 안전교육 주기적 실시 여부 등 확인 * 단, 불가피한 경우 HRD 또는 인사권자 인터뷰로 대체 가능								
			③ 기업의 중장기적 HRD 계획 · 방안								
			<table border="1"> <tr> <td>매우우수</td> <td>우수</td> <td>보통</td> <td>미흡</td> </tr> <tr> <td>10점</td> <td>7점</td> <td>3점</td> <td>0점</td> </tr> </table>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10점	7점	3점	0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10점	7점	3점	0점								
			- (확인방법) CEO 인터뷰* 내용,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기업 자체적으로 구체적 HRD계획이 있는지, 일학습병행을 계획에 어떻게 포함시켜 활용할 것인지, 숙련근로자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등이 있는지 등을 확인 * 단, 불가피한 경우 HRD 또는 인사권자 인터뷰로 대체 가능								
			④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역량								
			<table border="1"> <tr> <td>매우우수</td> <td>우수</td> <td>보통</td> <td>미흡</td> </tr> <tr> <td>10점</td> <td>7점</td> <td>3점</td> <td>0점</td> </tr> </table>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10점	7점	3점	0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10점	7점	3점	0점								
			- (확인방법) CEO 인터뷰* 내용,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훈련과정 개발 및 실시·평가 등 일학습병행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도 확인 * 단, 불가피한 경우 HRD 또는 인사권자 인터뷰로 대체 가능 - 훈련과정 개발시 기업의 기술력 등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분류	중분류	세부 항목	지표 세부내용																
		유사 훈련 실시 경험 (5)	<input type="checkbox"/> 배점기준 <table border="1"> <tr> <td>3회 이상</td> <td>2회</td> <td>1회</td> <td>0회</td> </tr> <tr> <td>5점</td> <td>3점</td> <td>1점</td> <td>0점</td> </tr> </table> <input type="checkbox"/>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노동부, 타 정부 부처 등에서 운영하는 기업 소속직원 대상 양성 교육일 때 인정 사업주훈련 등은 공단 DB를 통해 확인, 나머지 사업은 현장 심사시 기업에서 제시하여 확인 * 유사훈련 예시: 사업주훈련(위탁훈련 포함),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중소기업학습조직화, 채용예정자훈련, 체계적 현장 훈련, NCS 기업개발컨설팅, 일학습병행 타 유형 등 (각 사업 별 중복실시는 1회만 인정) * 단순 임금지원성 사업 또는 기업 자체 훈련 불인정 	3회 이상	2회	1회	0회	5점	3점	1점	0점								
3회 이상	2회	1회	0회																
5점	3점	1점	0점																
기업 여건의 적절성 (30)	기업규모 및 건전성 (30)	신용 등급 (5)	<input type="checkbox"/> 배점기준 ① 신용등급이 A~D등급으로 표시된 경우 <table border="1"> <tr> <td>A등급군</td> <td>B등급군</td> <td>C등급군</td> <td>D등급군</td> </tr> <tr> <td>5점</td> <td>4점</td> <td>3점</td> <td>지정제외</td> </tr> </table> ② 신용등급이 ABCD 등급체계가 아닌 경우 <table border="1"> <tr> <td>최상위 등급</td> <td>최상위 두 번째 등급부터 최하위 세 번째 등급까지</td> <td>최하위 두 번째 등급</td> <td>최하위 등급</td> </tr> <tr> <td>5점</td> <td>4점</td> <td>3점</td> <td>지정제외</td> </tr> </table> <p>* 보고서상 신용등급이 ABC 등급체계를 따르지 않을 경우(예 : 1등급, 2등급/ eA, eB 등), 해당 신용등급체계에서 적용하는 등급 구간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배점</p> ③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평가 요청내역이 없거나 금융거래 내역 없는 등의 사유로 신용등급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신생기업 등)는 0점 <input type="checkbox"/>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산*을 통해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을 조회 (공단에서 별도 사이트 활용) * 전산에 유효한 신용등급 정보가 조회되지 않거나, 더 유리한 정보가 있는 경우 기업 제출 정보로 배점 가능 신용등급은 신청 시점을 기준 가장 최근 등급 적용 인정 가능한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보고서(평가등급, 조사등급, 모형등급) 기술신용평가보고서(기업 신용등급 항목) 	A등급군	B등급군	C등급군	D등급군	5점	4점	3점	지정제외	최상위 등급	최상위 두 번째 등급부터 최하위 세 번째 등급까지	최하위 두 번째 등급	최하위 등급	5점	4점	3점	지정제외
A등급군	B등급군	C등급군	D등급군																
5점	4점	3점	지정제외																
최상위 등급	최상위 두 번째 등급부터 최하위 세 번째 등급까지	최하위 두 번째 등급	최하위 등급																
5점	4점	3점	지정제외																

분류	중분류	세부 항목	지표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신평가보고서 등 은행에서 발급한 각종 증빙 서류(대외공개용 자료만 인정) - 신용등급 예외적용 대상인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경우 최상위등급(5점) 부여 - 사업장 유형이 모기업 산하에 있는 지점 형태일 경우에는 본사 신용등급 적용 가능 ※ 단, 본사와 재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프랜차이즈 가맹점일 경우에는 본사 신용등급 적용 불가 																				
		상시 근로자 수 (15)	<p>□ 배점기준</p> <table border="1"> <tr> <td>100이상</td> <td>50이상 -100미만</td> <td>20이상 -50미만</td> <td>20미만</td> </tr> <tr> <td>15</td> <td>12</td> <td>9</td> <td>6</td> </tr> </table> <p>□ 확인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RD-Net 상시근로자 수 확인 또는 (기업제시 숫자와 HRD-Net상 상시근로자 수가 맞지 않을시) 티 상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에서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 확인(3개월 유지 인원) • • 단독기업형(50명), 공동훈련센터형(20명) 이상 ※ 청년친화 강소기업, 강소기업, Best HRD기업, 공공기관, 명장기업, 기능한국인기업, 우수숙련기술자기업, 숙련기술 전수자기업, 숙련기술모범사업체, 월드클래스, 우수기업 연구소(ATC, ATC+),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이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추천기업,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업군(특화업종(특구)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공동훈련센터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수 5명까지 예외 적용 가능 (도제 포함) 	100이상	50이상 -100미만	20이상 -50미만	20미만	15	12	9	6												
100이상	50이상 -100미만	20이상 -50미만	20미만																				
15	12	9	6																				
	장기근속 현황(10)	장기 근속 현황 (10)	<p>□ 배점기준(설립 5년 이상 기업의 경우)</p> <table border="1"> <tr> <td>70%이상</td> <td>50%이상 70%미만</td> <td>40%이상 50%미만</td> <td>30%이상 40%미만</td> <td>30%미만</td> </tr> <tr> <td>10</td> <td>7</td> <td>5</td> <td>3</td> <td>0</td> </tr> </table> <p>- (고용보험취득일로부터 참여신청일까지 3년 이상 근무자 수/전체 피보험자 수)*100에 따라 배점</p> <p>□ 배점기준(설립 5년 미만 기업의 경우)</p> <table border="1"> <tr> <td>70%이상</td> <td>50%이상 70%미만</td> <td>40%이상 50%미만</td> <td>30%이상 40%미만</td> <td>30%미만</td> </tr> <tr> <td>10</td> <td>7</td> <td>5</td> <td>3</td> <td>0</td> </tr> </table> <p>- (고용보험취득일로부터 참여신청일까지 기업 운영기간의 50% 이상 근무자 수/전체 피보험자 수)*100에 따라 배점</p> <p>□ 확인방법</p>	70%이상	50%이상 70%미만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30%미만	10	7	5	3	0	70%이상	50%이상 70%미만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30%미만	10	7	5	3	0
70%이상	50%이상 70%미만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30%미만																			
10	7	5	3	0																			
70%이상	50%이상 70%미만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30%미만																			
10	7	5	3	0																			

분류	중분류	세부 항목	지표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티 상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의 참여신청일 기준 고용 보험피보험자 수 확인 										
훈련 준비 상황 (25)	인적인프라 현황(10)	기업 현장 교사 후보군 보유 (10)	<input type="checkbox"/> 배점기준 <table border="1"> <tr> <td>6명 이상</td> <td>5명</td> <td>4명</td> <td>3명</td> <td>2명 이하</td> </tr> <tr> <td>10</td> <td>7</td> <td>5</td> <td>3</td> <td>0</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요건에 부합한 경우의 해당인원 수에 따라 배점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등교육법」에 제 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②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해당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④ 법 제31조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⑥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div> <input type="checkbox"/>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심사시 기업현장교사 자격기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시 배점 ① 졸업증명서 등, ①②④⑤⑥ 경력증명서, ③④⑤ 해당 자격증	6명 이상	5명	4명	3명	2명 이하	10	7	5	3	0
	6명 이상	5명	4명	3명	2명 이하								
	10	7	5	3	0								
물적인프라 현황 (10)	훈련 시설 장비 (10)		<input type="checkbox"/> 배점기준 <table border="1"> <tr> <td>매우우수</td> <td>우수</td> <td>보통</td> <td>미흡</td> </tr> <tr> <td>10점</td> <td>7점</td> <td>3점</td> <td>0점</td> </tr> </table> <input type="checkbox"/>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심사시 확인 • 기업체 보유훈련장비 현황, 장비의 위치 및 안전 확보 여부 등에 따라 비계량 평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10점	7점	3점	0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10점	7점	3점	0점										
안전· 보건관리 적정성(5)	안전· 보건 관리 적정성 (5)		<input type="checkbox"/> 배점기준 <table border="1"> <tr> <td>매우우수</td> <td>우수</td> <td>보통</td> <td>미흡</td> </tr> <tr> <td>5점</td> <td>3점</td> <td>1점</td> <td>0점</td> </tr> </table> <input type="checkbox"/>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른 사업장별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배점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 아래에 따름 • (매우우수) 위험성평가 담당자 지정 및 주기적인 평가실시, 평가결과에 따른 피드백 실시 등 전반적인 위험관리 매우 우수, 최근 6개월 이내 안전보건교육 이수 사업장 등 • (우수) 위험성평가 담당자 지정 및 주기적인 평가실시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평가결과에 따른 피드백 등 개선조치 미흡, 최근 1년 이내 안전보건교육 이수 사업장 등 • (보통) 위험성평가 담당자 지정 및 평가실시를 하였으나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장 등 • (미흡) 위험성평가 담당자 지정 및 평가 미실시 ※ 안전보건공단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기업」은 [매우우수]로 배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5점	3점	1점	0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5점	3점	1점	0점										

분류	종분류	세부 항목	지표 세부내용																									
			※ 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한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안전보건공단 위탁 교육 포함)만 인정 - 안전보건공단 위탁교육일 경우 고용부가 공고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위탁기관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고용노동부 홈페이지-사전 정보 공표목록에서 위탁기관 목록 확인 가능)																									
		첨단·디지털 관련분야 훈련과정 (가점 3)	<p>□ 확인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제 외 모든 유형: 첨단·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과정* 운영여부 확인 * 3D프린터운용_L2, IoT시스템운영·관리_L4, IT시스템운영_L5, IT프로젝트관리_L6, SW개발_L3, SW개발_L5, SW아키텍트_L6, SW테스트_L5, 가상훈련콘텐츠SW개발_L5, 디스플레이개발_L4, 디스플레이생산_L3, 디스플레이생산_L4, 로봇기구 개발_L5, 로봇소프트웨어 개발_L5, 로봇제어기하드웨어개발_L5, 바이오 에너지생산기술_L5, 바이오의약품제조_L3, 바이오의약품 제조_L5, 바이오화학제품제조_L3, 바이오화학제품제조_L5, 반도체설계_L3, 반도체설계_L4, 반도체장비개발_L2, 반도체 장비개발_L5, 반도체장비조립_L2, 반도체장비조립_L3, 반도체제조운영_L3, 블록체인서비스개발_L5, 빅데이터구축·운영엔지니어링_L5, 빅데이터분석_L5, 스마트물류 운영·관리_L4, 스마트팜 개발_L3, 스마트팜 개발_L5, 스마트팩토리시스템관리_L3, 스마트팩토리시스템관리_L6, 스마트팩토리시스템설치_L3, 연료전지에너지생산기술_L5, 인공 지능개발_L5, 임베디드SW개발_L5, 임베디드SW개발_L6,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개발_L5,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개발_L3, 태양광에너지생산기술_L3, 태양광에너지생산기술_L5, 태양열 에너지생산기술_L5, 폐자원에너지생산기술_L5, 풍력에너지 생산기술_L5, 해양에너지생산기술_L5 - 그 밖에 심사위원이 현장심사 시 기업의 생산품 및 훈련 과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첨단·디지털 훈련과정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도제 유형: 아래의 선정 학교의 해당 종목만 가능 <p>※ 일학습운영부-2680('20.4.27.) 문서 참고</p>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번</th> <th>참여학교</th> <th>사업단</th> <th>훈련분야(훈련종목)</th> <th>훈련기간</th> </tr> </thead> <tbody> <tr> <td>1</td> <td>광주전자공고</td> <td>광주전자공고</td> <td>첨단자동차 (자동차정비_L2)</td> <td>1.5년</td> </tr> <tr> <td>2</td> <td>세명컴퓨터고 서울디지털고 상일미디어고 한양공고</td> <td>세명컴퓨터고</td> <td>소프트웨어 (SW개발_L3)</td> <td>1.5년</td> </tr> <tr> <td>3</td> <td>경주정보고</td> <td>경주정보고</td> <td>스마트팩토리 (전산응용기계설계_L2)</td> <td>1.5년</td> </tr> <tr> <td>4</td> <td>삼일공고</td> <td>삼일공고</td> <td>IoT(SW개발_L3)</td> <td>1.5년</td> </tr> </tbody> </table> <p>□ 사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디지털 관련분야 가점부여 시 해당 과정기준으로 심사 (물적 인프라 현황 등) • 첨단·디지털 관련분야로 신청하였다가, 일반과정으로 훈련 과정 개발할 경우 '훈련과정 개발' 착수 불가 	연번	참여학교	사업단	훈련분야(훈련종목)	훈련기간	1	광주전자공고	광주전자공고	첨단자동차 (자동차정비_L2)	1.5년	2	세명컴퓨터고 서울디지털고 상일미디어고 한양공고	세명컴퓨터고	소프트웨어 (SW개발_L3)	1.5년	3	경주정보고	경주정보고	스마트팩토리 (전산응용기계설계_L2)	1.5년	4	삼일공고	삼일공고	IoT(SW개발_L3)	1.5년
연번	참여학교	사업단	훈련분야(훈련종목)	훈련기간																								
1	광주전자공고	광주전자공고	첨단자동차 (자동차정비_L2)	1.5년																								
2	세명컴퓨터고 서울디지털고 상일미디어고 한양공고	세명컴퓨터고	소프트웨어 (SW개발_L3)	1.5년																								
3	경주정보고	경주정보고	스마트팩토리 (전산응용기계설계_L2)	1.5년																								
4	삼일공고	삼일공고	IoT(SW개발_L3)	1.5년																								

분류	종분류	세부 항목	지표 세부내용
	<p>정부부처 인증 등*에 해당하는 기업 (가점 4) * 지표 세부내용 참조</p>		<p><input type="checkbox"/> 확인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사회적경제기업, ②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선도기업, ③산업통상자원부 외투기업 부문 포상기업, ④산업통상자원부 농공단지 소재 기업, ⑤교육부 산학협력 우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최근 1년 이내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기업 (감점 20)</p>		<p><input type="checkbox"/> 확인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정취소 처분이력이 있는 기업(공단에서 HRD-Net을 통해 확인)
	<p>최근 1년 이내 학습기업의 지위를 자진반납한 기업 (감점 15)</p>		<p><input type="checkbox"/> 확인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자진반납한 이력이 있는 기업(공단에서 HRD-Net을 통해 확인)

[별첨 3-2]

□ 우량기업 지정지표 우대사항

지정지표 항목	배점	심사항목		비고	
		일반기업	우량기업		
I. 인력양성에 대한 의지	1.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의지				
	기업전담인력 선발·관리	10	○	① CEO인터뷰를 통한 정성평가	
	학습근로자 선발·관리	10	○		
	중장기 HRD 계획·방안	10	○		
	훈련과정 개발·운영역량	10	○		
- 유사 훈련 실시경험	5	○	×	우량기업 만점 적용	
II. 기업여건의 적절성	1. 기업규모 및 건전성				
	신용등급	5	○	○	1차 서류심사시 공단 담당자가 확인
	상시근로자 수	15	○	○	
2. 장기근속 현황	10	○	×	우량기업 만점 적용	
III. 훈련준비 상황	1. 인적 인프라 현황	10	○	×	우량기업 만점 적용
	2. 물적 인프라 현황	10	○	○	② 물적 인프라 확인 정성평가
	-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5	○	×	

[별첨 4]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청소년보호법 제2조]

-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청소년 대상 훈련에 참여 불가

※ **향후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조항	요건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11	「경륜·경정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는 청소년 대상 훈련에 참여 불가

※ **향후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조항	요건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 생산, 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서식1
일학습병행 지정신청서(전산계출로 대체)_참고용

(뒤쪽)

첨부 서류	1. 일학습병행에 관한 수행계획서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와 관련된 기업 신용등급에 관한 서류(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서
----------	--

작성 시 유의사항

1. 희망 훈련분야는 국가직무능력표준 24개 대분류 중 해당분야를 작성합니다.
2. 훈련유형 중 대학연계형은 산업형 중 해당하는 경우 √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3. 훈련실시장소와 주소가 같은 경우 훈련실시장소는 적을 필요 없습니다.
4. 기업신용등급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없음”을 적으면 됩니다.
5. 학습근로자 근로조건은 훈련실시 후 학습근로자의 임금수준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6. “단독기업형”이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기업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학습기업 참여형태를 말합니다.
7. “공동훈련센터형”이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은 학습기업이 수행하고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은 학습기업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동훈련센터가 수행하는 학습기업 참여형태를 말합니다.
8.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이란 기능대학·전문대학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중·고급 수준의 기술훈련 방식의 학습기업 참여형태를 말합니다.
9. “도제학교”란 특성화고등학교 및 일반고등학교의 학생이 학교(이론 및 기초실습)와 기업(심화실습)을 오가며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훈련을 받는 현장 중심 직업교육 방식의 학습기업 참여형태를 말합니다.
10. “전문대학”란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사체계를 기반으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병행을 통해 능력중심 기반의 맞춤형 실용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학습기업 참여형태 말합니다.
11. “산업형 과정”이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에서 정한 능력단위 전체를 반영하여 개발된 일학습병행과정을 말합니다.
12. “기업형 과정”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단위를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반영하여 개발된 일학습병행과정을 말합니다.

서식2

사업수행계획서(전산제출로 대체)_참고용

회사 소개

- 연혁 및 일반현황 :
- 주요 생산품 및 제품 :
- 업종 :
- 조직도(종합) * 조직도나 조직 현황을 간략히 기재하고, 교육훈련 전담부서 표시

I. 인력양성 목표의 적절성

1. 훈련과정의 적절성

가. 훈련과정

산업형 / 기업형 (대학연계형 선택 여부)

- * 대학연계형의 경우 산업형만 인정하며, 재직자 공동훈련센터가 대학일 경우에만 가능
- * 산업형: 해당자격 필수능력단위 전체 활용(재학생은 반드시 산업형으로 신청)
- * 기업형: 전체 훈련시간 중 NCS 50%이상 활용
- * 산업형 신청 후 기업형 과정으로 전환 불가

나. 훈련직무 분야(훈련대상자 채용직무 분야) 기재(자격명 또는 NCS 세분류)

-
- * (예시) (산업형) 프레스금형제작사_L3, (기업형) 특수용접
 - *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장시간 숙련형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무
 - * 단기 교육훈련으로도 독립적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반복 직무 제외

다. 훈련실시 기간

() 개월

- ※ 과정 및 자격 수준별 최소훈련시간

 - 산업형과정: L2 400시간, L3 600시간, L4~6 800시간
 - 기업형과정: 600시간

- ※ 재직자: 최소 12개월 ~ 최대 24개월(학위취득과정은 48개월 가능) / 도제학교: 최소 12개월 ~ 최대 24개월 / IPP: 최소 12개월 / 전문대 재학생: 12개월
- * 모집·채용 단계에서의 학습근로자 학력수준(학습근로자 요구수준)과 일학습병행 이수 후 학습근로자 목표 수준(훈련수준)에 따라 최소훈련기간 결정
- * 기업지정 후 훈련과정 개발 과정에서 훈련 직무의 특성상 훈련기간의 확대·조정이 필요한 경우 동의함.

서식2

사업수행계획서(전산제출로 대체)_참고용

라. 사업장의교육훈련(Off-JT)과 도제식현장교육훈련(OJT) 구성 비율

<사업장의교육훈련 시간(%) : 현장훈련 시간(%)>

- * 산업형과정 : 사업장의교육훈련(Off-JT) 시간은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25이상이고 100분의 75 이하일 것
- * 기업형과정 : 도제식현장교육훈련(OJT) 시간은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50이상이고 100분의 80이하일 것
- * 사업장의교육훈련은 이론교육 및 이론 관련 실험실습 등 포함

마. 모집·채용 학습근로자의 학력수준

- 재학생(고교/전문대/대학) (학년)
- 졸업생(고교/전문대/대학) 기타()

바. 모집·채용 학습근로자의 전공 요구 수준

- 관련분야 전공자 비전공자 무관

2.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수

가. 총 명(기채용자 명, 신규채용 예정 명)

Ⅱ. 인력 양성에 대한 의지

1. 일학습병행 이해도 및 참여 의지

가. 일학습병행 수행계획

① 전담자(기업현장교사·HRD담당자) 선발 및 관리

② 학습근로자 선발 및 관리

③ 기업의 중장기적 HRD 계획·방안

④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계획

서식2

사업수행계획서(전산제출로 대체)_참고용

나. OJT 시간 포함 학습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 : () 시간
* 주당 근로시간은 통상 40시간 이하, 미성년자는 35시간 이하가 되어야 함(확약서 제출)

다.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이수 학습근로자 대우(일반근로자 대비)

우대(우대계획 :) 동등대우

* 학습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Ⅲ. 기업 여건의 적절성

1. 신용등급 및 기업규모

가. 신용등급 :

- * 신용등급증빙 불가의 경우 '없음'으로 작성
- * 필요시 신용평가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신용관련 증빙서 제출 가능

나. 상시근로자 수 : 총 명

* 단독기업형 기업(50명 이상), 공동훈련센터형 기업(20명 이상)

<p><예외></p> <p>① 청년친화 강소기업, 강소기업, Best HRD기업, 공공기관, 명장기업, 기능한국인기업, 우수숙련기술 자기업, 숙련기술전수자기업, 숙련기술모범사업체, 월드클래스, 우수기업연구소(ATC, ATC+),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기업</p> <p>②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추천기업,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업군(특화업종(특구) 지원센터 추천기업)</p> <p>①, ②에 대해서는 공동훈련센터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수 5명까지 예외 적용</p>
--

2. 기업의 근로조건

가. 설립기간에 따른 기업구분

설립 5년 이상 기업 설립 5년 미만 기업

나. 장기근속자 비율

70% 이상 50% 이상 70% 미만 40% 이상 50% 미만

30% 이상 40% 미만 30% 미만

* 계산식

- (설립 5년 이상 기업) 고용보험 취득일 3년 이상 경과자 / 전체 피보험자 수 × 100
- (설립 5년 미만 기업) 기업 운영기간의 50% 근무자 수 / 전체 피보험자 수 × 100

3. 독자적 기술력 보유 (복수기재 가능) ※ 증빙자료 첨부

특허 ()건 () 기술분야 실용신안 ()건 () 분야

ISO 인증()

정부지정 우수기술력 보유 기업 인정 () (년도)

VI. 안내사항(필독)

행정처분 통지 의무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학습병행에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적용(준용)하여, 일학습병행을 포함한 동 법에 근거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전반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행정처분 효력기간 중에는 일학습병행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일학습병행 참여 중인 기업이 중도에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의 범위에 따라 진행 중인 일학습병행 훈련 중단 또는 추가 훈련실시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따라서, 일학습병행 기업으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일학습병행관련 행정처분 포함), 또는 고용노동부 공고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산재다발 사업장에 해당되는 기업,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한 참여제한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즉시 관할 지역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또는 지사에 그 사실을 통지해 주시기 바라며, ■ 해당 사전 통지 의무 불이행에 따른 문제의 귀책사유는 해당 기업에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위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에서는 학습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통한 기업-근로자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체불 또는 산재발생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강력하게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청기업에 신청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노동관계법 준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이 있어 현재 처분 중임을 숨기고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학습기업으로 지정될 수 없으며, 지정 이후라도 해당사실 발각되었을시 즉시 지정무효 및 지정취소 절차를 이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각종 고용지원사업과 중복 의무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과 일학습병행을 중복 참여하는 경우 중복지원에 따른 제한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해당사업의 지원기준에 일학습병행과 중복지원을 금지한 경우 참여 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일학습병행과 중복 참여시 관할 지역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또는 지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전 통지 의무 불이행에 따른 문제의 귀책사유는 해당 기업에 있습니다.
사업수행계획서 허위작성·제출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 공고문 내용에 따라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허위 작성하여 학습기업 지정받았을 경우 지정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요건 미달시 지정취소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학습기업 지정 후 상시근로자 수 최소요건, 신용등급 최하위 두 번째 등급 이상, 기업 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각 1인 이상, 훈련실시 가능한 시설·장비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정취소 절차를 이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현장방문 반드시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심사, 훈련모니터링 등 공단이 업무상으로 훈련실시장소를 방문할 때 반드시 훈련실시장소에 입장 가능해야 하며, 기업 보안문제 등 이유 불문하고 공단이 훈련장소 방문 불가능할 경우 지정 제외, 훈련실시중단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식3 신청기업 확인서_전산신청시 첨부

□ 신청기업은 아래 세부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예",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니오"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모든 답변이 "예"인 경우 참여 가능)

구분	세부내용		답변
기업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이 아닐 것	예 / 아니오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기업이 아닐 것	예 / 아니오
	산재발생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된 내용과 관련된 사업장(공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으로 한정한다)이 아닐 것	예 / 아니오
		참여신청 이후 산업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 아닐 것	예 / 아니오
행정처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아닐 것	예 / 아니오	
학습근로자 채용 및 관리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 따른 학습근로자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미성년자는 35시간)로 운영할 것이다 * 근로기준법 제 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 따라 연장근로에 합의한 경우는 가능		예 / 아니오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하며,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인지하고 있다. * 일학습병행법 제24조(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및 제42조(과태료) 조항		예 / 아니오
훈련과정 준비 및 운영	훈련과정 개발신청 전일까지(재학생단계 등은 훈련과정 인정심사 신청 전일까지)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사 이수 및 훈련실시신고 전일까지 HRD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예 / 아니오
	훈련과정 인정 후 10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에 훈련을 실시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예 / 아니오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교육훈련기간 중 훈련교재, 실습재료 등 훈련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예 / 아니오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예 / 아니오
	훈련실시 이력이 1년 이상인 학습기업이 학습근로자 중도탈락 등 훈련 성과가 미흡한 경우 추가훈련 실시여부·기간 등에 관해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예 / 아니오

본 사업장은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당 사업장의 정보를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공하고 학습기업의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동안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산업재해 관련 정보를 조회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5조(학습기업의 지정 등) 제3항에 근거하여 **부지정 또는 지정 후에도 지정취소** 될 수 있으며, 훈련과정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개발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상**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기업의 지정받은 경우 학습기업의 지정취소 가능

20 년 월 일

기업명 및 대표자

(인)